

— 구미시 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년 10월 16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0년 10월 16일

라. 상정일자 : 2000년 10월 21일

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이 용 태

나. 제안이유

-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 신설로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효율적으로 관리 코자함.

다.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

(제3조)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 수립과 시행, 전통사찰과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변 지역 유지·보전 기반 조성

(제7조)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계획안을 공고하여 사찰과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각종 건축 및 인·허가 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 주민은 전통사찰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잘 보전된 주변지역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라. 참고사항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6조의 2
- 건축법 제4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경 도

- 2000. 1. 12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 2의 규정이 신설되어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상위법 위임에 따른 신설 조례입니다.
- 본 조례는 제2조(정의)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타 시 조례(영주, 성남)는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하여 구체화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 수립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는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에 요구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시장은 ... 주변지역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7조(주변지역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시장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전을 위해 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주변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사업주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시행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업무분장이 모호하므로 “모든 건설사업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